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. 4. 6 선고 2020가단267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종중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1. 4. 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6. 1.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에 의한 판결)

판사허윤범

별지